

참고

대기배출시설 제외 적용 예시

예시
01

비산배출물질, 휘발성유기화합물, 지정악취물질 등 배출시설(이하 "비배출시설")의 처리를 위한 폐가스 소각시설의 경우

- 배출공정도



- 비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물질의 배출 억제 및 방지 등을 위한 시설이므로 해당 폐가스 소각시설은 **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**

예시
02

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등의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폐가스 소각시설의 경우

- 배출공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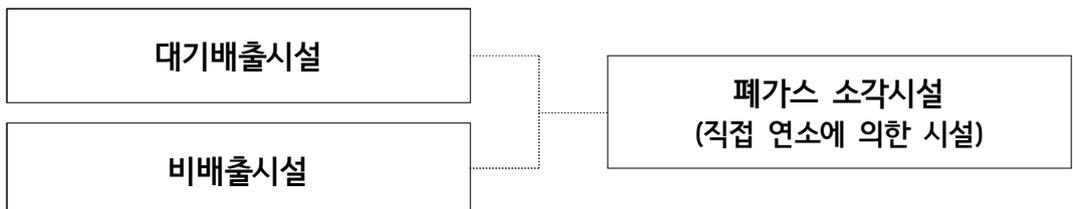


- 해당 폐가스 소각시설은 비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물질의 처리가 아닌 대기배출시설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하므로 방지시설인 동시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**대기배출시설 제외 대상 아님**

예시
03

비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폐가스 소각시설의 경우

- 배출공정도



- 해당 폐가스 소각시설은 비배출시설의 배출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도 동시에 처리하는 만큼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인 동시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**대기배출시설 제외 대상 아님**